

## 예금보험공사(공자위) 국정감사 질의서

2005. 9. 23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 <삼성보고서> 5대 의혹 해명해야

- 삼성상용차 조사보고서 수상하다 : 5대 의혹 해명하고 자료 공개하라

- 1 : 왜 손실이 컸던 1998~2000년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 2 : 손실을 이익으로 뒤바꾼 18억은 심각한 분식회계 아닌가?
- 3 : 과연 1997년 자료가 무혐의처리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했는가?
- 4 : 왜 조사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가?
- 5 : 왜 파산 3년이 지나서 조사하였고,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지체되었는가?

-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삼성상용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상용차는 1996년 8월 삼성중공업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2000년 12월 파산 선고를 맞습니다.

<표 1> 삼성상용차 진행 경과

|              |                           |
|--------------|---------------------------|
| 1996. 8. 22  | 회사설립 : 삼성중공업에서 분리         |
| 1998. 10.    | 소형트럭 출하 개시                |
| 1999. 9.     | 자본금 증자(1,000억에서 4,400억으로) |
| 2000. 9.     | 르노사 인수 타진 결렬              |
| 2000. 12. 12 | 파산 선고 (대구지방법원)            |

- 이에 따라 삼성상용차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부실금융기관 몫 3,100억원이 고스란히 예금보험공사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21조 2)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 참고: 예금자보호법 21조2

⑦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등과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9월 9일부터 삼성상용차 부실 조사를 시작하여 2차례 현장조사를 11월에 마쳤습니다. 맞습니까?

- 보고서는 1997년 회계관련자료가 “일부 오류는 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 본 의원은 며칠 전에야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금보험공사의 <삼성그룹 조사보고서 - 삼성상용차(주)·삼성자동차(주)>(55쪽 분량, 2004.12.29)를 열람, 주요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저는 이것은 삼성상용차 부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삼성상용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보고서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사실 이 보고서의 서술체계만 따라가면 무혐의 결론이 당연히 도출됩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4가지 혐의를 제기하면, 삼성상용차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조사팀은 그 소명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정하여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사장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작성되었다고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요청하는 자료도 제한 없이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의혹 1] 왜 손실이 컸던 1998~2000년을 조사하지 않았는가?

- 삼성상용차 재무제표를 보면, 1997년 2억 순익을 거둔 후, 1998년 724억, 1999년 2,065억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파산년도인 2000년에도 1,716억 적자를 기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의 경영부실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 중요한 년도가 당기순익 2억을 거둔 1997년입니까? 아니면 1998~2000년 기간입니까? 조사보고서는 1997년 한해 재무제표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표 2> 삼성상용차 당기순익표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1억  | 2억2천 | △724억 | △2,065억 | △1,716억 |

\* 자료 : 예금보험공사, “삼성그룹 조사보고서” (2004. 12. 29)

- 이 보고서는 기업의 부실상태를 조사한다면서 부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1998~2000

년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파산년도가 2000년이면 당연히 그 때까지 전 시기를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1998~2000년은 삼성상용차가 설립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대우전자와 빅딜논의 까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경영이 불안했던 시기였고, 당연히 자금을 대출해준 채권단 입장에서는 당시 대출 유지가 적정했는지, 당시 삼성상용차 회계장부가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1998~2000년 시기가 빠진 조사는 원천적으로 삼성상용차 부실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의혹 2] 손실을 이익으로 뒤바꾼 18억은 심각한 분식회계 아닌가?

- 1997년 재무제표 분석은 물론 중요합니다. 1998년까지 진행된 대출의 판단근거가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상용차 회계자료에 의하면 1997년 2억원의 당기이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흑자회계 덕택에 1998년 대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표 3> 요약 :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혐의 및 결론

(단위: 백만원)

| 혐 의              | 금 액    | 소 명                                    | 결 론                      |
|------------------|--------|--|--------------------------|
| 일반관리비의 건설중인 자산계상 | 9,786  |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 업무 특성을 반영한 회계였음 | 9억원 회계오류 확인되나 회계처리 위반 아님 |
| 일반관리비의 연구개발비 계상  | 2,336  | 연구소 기능에 사용한 비용임                        | 무혐의                      |
|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 1,925  | 실질적인 대손추정액임                            | 무혐의                      |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1,733  | 시운전적인 미완성상태였음                          | 9억 과소계상하였으나 회계처리 위반 아님   |
| 계                | 15,780 |  | 18억 회계 오류이나 회계처리 위반 아님   |

\* 자료: 예금보험공사, “삼성그룹 조사보고서” (2004. 12. 29) 재구성.

- 그런데 1997년 흑자회계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결론이 석연치 않습니다. 조사보고서는 1997년 삼성상용차 회계처리내역에서 <표 3>에 요약된 4가지 혐의를 포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발견된 18억원의 분식회계도 금액크기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회계처리 위반은 아니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 회계전문가들에 의하면, 고의적 분식회계의 판단여부는 금액이라는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내용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18억원의 분식으로 당해 삼성상용차 손익계정이 당기순

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적자기업이 흑자기업으로 뒤바뀌는 매우 중요한 질적 변화가 조작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자금대출이 필요한 신규회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채권자가 이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혹 3] 과연 1997년 자료가 무혐의처리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했는가?

- 조사보고서는 조사대상이 “1997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분식여부를 조사하던 중 발견된 <’97년 공공손익 확정(안)>이라는 기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손익확정(안)>이라는 문서 외에 다른 공식자료를 별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게다가 보고서가 밝힌 조사경과를 보면 ‘회계관련자료가 일부만 보관되어 있어 일부 회계자료와 전산자료를 근거로 조사하였고, 품의서 등 전산자료는 판독 불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한된 자료만을 참고하여 무혐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도 충분치 않는 데, 어떻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의혹 4] 왜 조사결과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사결과와 보고서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의 부실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제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런 중요한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지금까지 왜 공개하지 않으시죠?

- 현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4 ④항)에 따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의 부실상태를 조사한 내용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의 회계가 정상적이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인데 왜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지 의문이 듭니다.

- 혹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별회사의 비밀 보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정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고유명사들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상 그 기업은 이미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공공물이라는 사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 저는 이번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자료통제는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남길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혹 5] 왜 파산 3년이 지나서 조사하였고,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지체되었는가?

- 삼성상용차가 파산한 것이 2000년 12월인데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부실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신속히 부실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게다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조사결과가 조사착수 연도인 2003년 12월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상용차 부실 조사보고서가 완성된 것은 현장조사가 종료되고 예정일 보다 무려 1년이 더 지난 2004년 12월 29일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조사 완료가 지체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 결론 : 삼성상용차 의혹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해명하고,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 제가 지금까지 삼성상용차 부실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5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장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안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찬성하시지요? 가능한 조속히 예금보험공사는 제가 오늘 제기한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저는 삼성상용차 보고서 관련 1차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저는 삼성상용차 손익관련자료 및 소명자료, 금감원 회신자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원활한 국정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자동차 손실금 미보전은 ‘대국민 3조7천억 우롱 사건’

1. 삼성자동차 논란의 핵심 : 삼성의 부실손실 보전 미이행

- 삼성자동차는 1995년 3월에 설립되었으나 4년 후인 1999년 6월 법정관리 신청되었고 2000년 9월 르노사에 인수된 회사입니다. 최근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손실금 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 부실을 떠안은 채권단에 이견희 회장이 2조 4,5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표 4> 삼성자동차 진행 경과

|              |                     |
|--------------|---------------------|
| 1995. 3. 28  | 삼성자동차 설립            |
| 1998. 4. 1   | SM5 판매 개시           |
| 1998. 12. 7  |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빅딜 발표   |
| 1999. 상반기    | 빅딜 무산               |
| 1999. 6. 30  |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
| 1999. 8. 24  | 삼성/채권단 합의서 체결       |
| 2000. 12. 31 | 채권단 손실보전 시한 (보전 안됨) |
| 2000. 9. 1   | 르노사에 인수             |

- 1999년 8월 24일 삼성과 채권단은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이 입은 손실금 2조 4천억원을 보전해주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350만주를 제공하고, 삼성계열사는 이 주식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여 2조 4,500억원을 채권단에 현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70만원에 미달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추가 50만주, 삼성계열사의 자본출자 등으로 완전히 보전해야 하는 조항도 부가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채권단/삼성 합의서> 요약

- 갑(이건희)은 도의적 차원에서 350만주를 병(채권단)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증여.
- 갑의 증여액이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갑은 50만주 추가 증여.
- 을(삼성계열사)은 갑의 50만 추가출연으로도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손실 보전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
- 갑과 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부족분 지연 이자를 지급.

**2. 채권단 미회수 총액, 연체이자 포함 4조5천억 달해**

- 그런데 현재까지 채권단이 보전한 금액은 서울보증보험이 일부 삼성생명주식(118만주)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7,497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1조 7,003조원이 미보전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미보전액에 대한 연체이자 약 2조원을 합하면 총 3조 7천억원이 현재까지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 그런데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이후 정산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7,497억원도 확정 회수액이 아니라 미회수분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회수금은 2조 4,500억원과 이자 2조원을 합쳐 약 4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 3.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핵심 : 예보가 소유한 서울보증보험

<표 5> 삼성자동차 채권 미회수 현황 (2005. 9)

|                  |           |      |
|------------------|-----------|------|
| ABS              | 미회수분      | 연체이자 |
| 7,497억           | 1조 7,003억 | 약 2조 |
| <b>3조 7,003억</b> |           |      |
| <b>4조 4,500억</b> |           |      |

- 예금보험공사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핵심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지분 99%를 소유한 까닭에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삼성자동차 관련 2조원을 대지급하고, 인수한 삼성생명주식 일부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총 9,500억원을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1조 1천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표 6> 서울보증보험의 삼성자동차 채권 현황

(05.8.31 현재 / 단위 : 억원)

| 보증총액   | 대지금액   | 회수금액<br>주1) | 회수잔액   | 미 회수금액   |          | 채권소멸 주4) |
|--------|--------|-------------|--------|----------|----------|----------|
|        |        |             |        | 공장매각 주2) | 생명주식 주3) |          |
| 21,139 | 20,438 | 9,531       | 10,907 | 1,417    | 5,693    | 3,797    |

주1) 회수금액 : 주식ABS발행 7,479억, 연대보증계열사 변제 1,385억, 기타 공장매각 667억.

주2) 공장매각 : 향후 르노삼성차로부터 회수해야 할 장기분할 공장매각 대금.

주3) 생명주식 : 잔여주식 5,011억(715,823주 × 70만원), 후순위채권 683억원.

주4) 채권소멸 : 법원의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확정으로 권리소멸.

- 자료: 서울보증보험 “심상정의원 요구자료” (2005. 9. 22)

- 그래서 삼성측으로부터 미회수된 금액 중 서울보증보험 몫인 5,693억원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정한 시한인 2000년 12월 31일까지 삼성측은 2조 4,500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합의서 위반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4. 법정 소송으로 손실금 받아내야

- 그렇다면 이후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삼성 측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십니까?

- 삼성측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 '강압에 의한 합의서였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삼성생명 상장 건은 이 합의서와 독립적인 사안입니다. 또한 강압 주장은 합의서 내용이 삼성측 제안(추가 손실보전 책임에서 이견회 면제)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고할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더 이상 주춤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올해가 채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측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대국민 '우롱사건'입니다. 자신의 부실에 피해를 본 채권단에 손실금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잡아떼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단은 곧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시지요?

-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삼성은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견회 회장과 삼성계열사에게 약속한 손실금 보전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 정부의 제일은행 매각 자화자찬 황당하다

- IMF에 굴복해 제일은행 매각 ... DJ정권의 실패작

### 1. 제일은행 매각 건에 대해

○ 제일은행 매각으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내년(2006년)에도, 제일은행 매각이전(99년 12월)에 제일은행의 영업행위를 이유로, 일정기간(4년) 내에 소송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전(Indemnification)해 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1,610억원의 사후 지원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표 7> 제일은행 공적자금 투입·회수 현황 (2005년 7월 말 기준, 억원)

| 지원액     | 회수액     | 현재 미회수 잔액 |
|---------|---------|-----------|
| 176,574 | 122,970 | 53,604    |

※ 2006년 지원 예상액 : 1,610억원

○ 제일은행 매각은 정부가 IMF요구에 굴복하여 투기펀드에 메이저 은행을 팔아넘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에 속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후손실보전업선



(Put-back Option)을 부여해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비난을 받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제일은행 매각을 성공한 매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부실은행 정리 시 통상 총자산의 20~30%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경우 총자산(48조원) 대비 약 10% 수준으로 예상되는 제일은행의 정리비용은 상대적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백서(2005. 8 116p )

## 2. 공자위에 질의하겠습니다

### 1) 세계적으로 투기성 펀드에 메이저 은행을 판 사례가 있습니까?

※ 제일은행처럼 공적자금 투입과 동시에 매각한 경우는 찾을 수 없음

2) 제일은행을 산 투기 펀드는 1조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냈는데도 세금 한 푼 걷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 3)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처리할 때 일괄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 투기펀드에 일괄 매각한 경우도 없었다. 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었던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구조조정 기간 3년을 거친 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금도 일부 정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 Nordbanken의 경우 92년 국유화한 다음 구조조정 3년(92년~94년)을 거치고 95. 10부터 단계적으로 지분매각했다. 합병을 통해 Nordea 은행으로 탄생한 현재도 정부지분 약 19.8% 보유하고 있다.

호주 CBA의 경우는 2년 구조조정 후 5년에 걸쳐 단계 매각한 바 있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충분한 구조조정 기간을 거친 뒤 매각했다.

4) 일반금융기관의 매각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을 매각할 때 사후손실보전 계약(putback option)을 맺는 것이, 그것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까?

5) 공적자금 백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총자산의 20~30%를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제일은행은 10%만을 비용 처리했으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20~30%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8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부실 저축은행(S&L)을 처리를 근거로 20~30%

비용 처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는 아전인수이다. 미국의 저축은행 부실은행 처리는 우리나라 메이저 은행부실 처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6) 정부는 자화자찬에 앞서 지난날의 제일은행 매각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 우리금융지주를 지렛대로 금융공공성 회복 계기 마련해야

1.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특수 상황이라는 명분을 들어 외국펀드에 메이저 은행지분을 일괄 매각했습니다. 또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대형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방금융/서민금융 몰락,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 등록자가 14,000개에 이르고 대부업 이용자가 1백만명이 넘으며 금리도 200~300%에 이르는 상황, 메이저 금융기관마저 자회사를 통해 대금업에 나서는 상황은 이의 단적인 표현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몰락, 서민경제 몰락도 이 같은 정부정책과 밀접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우리금융 처리는 무너진 지방금융과 서민금융, 금융공공성의 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해온 바이지만 공자위가 기업을 매각할 '공적자금 극대화'를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 매각을 산업구조/소유구조 개편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해야하며 사회적인 비용/손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금융지주마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란 명목으로 전략적 투자자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 2. 예금보험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1) 지난해 이현재 전 장관이 우리금융지주를 삼성에는 넘기지 않는다고 국회 국감에서 발언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2) 우리금융지주 처리 문제는 그것을 무너진 지방금융과 서민금융 살리기, 금융공공성의 회복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유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우리금융지주는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전략적 투자자 개념은 사실 금융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지방금융/서민금융을 몰락시키는

주범이었습시다.

우리금융지주는 소유를 분산시키는 방향, 또는 정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하는 방향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은행들의 소유구조를 보면 소유 분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1대주주가 4~5%나 그 이하이고 10%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금융마저 허울 좋은 ‘주인 찾기’ 명분으로 사모펀드나 재벌에 팔아넘길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분산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보 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표 8> 주요은행 지분현황(2004년 말, 단위 : %)

|      | 은행        | 1대주주  | 2대주주  | 3대주주  | 4대주주 |
|------|-----------|-------|-------|-------|------|
| 영국   | Barclays  | 1.78  | 0.26  | 0.22  | 0.20 |
| 미국   | City      | 5.12  | 5.11  | 4.71  | 3.36 |
|      | BOA       | 4.96  | 3.72  | 3.17  | 3.01 |
|      | JP Morgan | 4.68  | 3.57  | 3.37  | 3.18 |
| 독일   | DEUTSCHE  | 7.50  | 1.05  | 0.46  | 0.45 |
| 네덜란드 | ING GROUP | 8.32  | 5.20  | 0.73  | 0.54 |
| 우리나라 | 외환은행      | 50.53 | 14.61 | 13.87 | 6.12 |
|      | 신한지주      | 5.17  | 4.25  | 3.94  | 3.29 |
|      | 한미        | 78.89 | 20.93 | -     | -    |
|      | 하나        | 9.89  | 5.43  | 5.17  | 4.96 |
|      | 제일        | 48.56 | 48.49 | -     | -    |
|      | 국민        | 14.12 | 8.88  | 4.26  | 4.06 |

\* 자료 : 각 은행 홈페이지 IR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국민은행 1대주주는 주식예탁증서(DR)임.

※ 예보의 우리금융 처리계획

우리금융지주(지분 78%)는 ‘2007년 3월 말까지’ 지배주주의 지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매각 추진

\* 공자위 동의를 얻어 1년 연장 가능

단기적으로 유통물량 확대를 통한 적정주가 형성을 위하여 블록세일 등 소수 지분 매각을 단계적으로 추진

여타 지분은 금융산업 발전에의 기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자위 심의를 거쳐 매각 추진

4)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지배적 수준을 정부가 보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 정부 지분율이 세계평균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지분을 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보 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표 9> 정부지분을 현황

|     | 세계평균<br>(95년 세계10대 은행 기준) | OECD국가 평균<br>(1995년 기준) | 우리나라<br>(2004년 말 기준) | 우리나라<br>(우리은행 민영화 경우) |
|-----|---------------------------|-------------------------|----------------------|-----------------------|
| 지분율 | 41.57%                    | 29.46%                  | 28.75%               | 19.63%                |

3. 황영기 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우리금융지주에서 최근 파행적인 노사관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LG투자증권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우리증권노조의 파업이 있었고 회사는 노조 상근간부 5명을 고소하여 현재 검찰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신용정보는 서울지 노위에서 6명의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판결을 내렸으나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의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 지노위에서 복직명령을 내렸고 회사의 재심청구가 있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한바 있습니다. 회사는 복직명령을 불이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출신 회장이 우리금융지주를 삼성식으로 무노조 경영을 하자는 것입니까?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우리금융지주가 국가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의 행위와 닮은 점이 있는 데요?

2) 국가소유인 우리은행마저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 아닙니까?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단기주의(Shor-termism)를 부추기며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증대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장과 임원들에게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은행도 행장과 경영진 및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적 있다. 금융기관의 스톡옵션은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단기주의(Shor-termism)를 부추기며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다.

※ 2005.9.13 열린 ‘스톡옵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공학센터 주최)에서....

- 석승훈 교수(테크노경영대학원)는 ‘스톡옵션이 인센티브 효과는 적는데 반해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어 부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또한 ‘금융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생명인데 ... 스톡옵션을 받은 금융사 경영자는 위험추구형(Risk taking) 전략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회사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함.

-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스톡옵션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 최근 삼성은 스톡옵션 폐지 발표함. 에스케이는 스톡옵션이 ‘책임경영을 독려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주장함. 현대차도 추가 부여 중단함.

## ■ 예보위원회 부실운영 ... 참석을 낮고 대리참석 일삼아

- 금융전문가 상근체제로 전환해야

### 1.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대해

○ 예금보험위원회는 보험금의 지급,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제외하고는 비록 업무 연관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들 비상근 위원이다 보니 자금지원이나 보험금 지급결정 등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예금보험위원회의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신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 예금보험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1)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진행 현황을 보면 불참이나 대리참석이 많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위원회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까?

2)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중립성을 가지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처럼 기관장 외의 내부 인사를 추가로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상근위원을 늘려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10>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진행 회수

| 년 도        | 2003년 | 2004년 | 2005년 8말 현재 |
|------------|-------|-------|-------------|
| 총회 수(서면회의) | 19(4) | 21(6) | 15(7)       |

<표 11> 회의소집시 당연직 위원 참석 및 대리참석 현황

| 년도       | 회의소집<br>횟 수 | 재정경제부 차관             | 기획예산처 차관             | 금감위 부위원장             | 한국은행 부총재             |
|----------|-------------|----------------------|----------------------|----------------------|----------------------|
| 03년      | 15          | 참석 : 2회<br>대리참석 : 1회 | 참석 : 7회<br>대리참석 : 7회 | 참석 : 8회<br>대리참석 : 7회 | 참석 : 5회<br>대리참석 : 1회 |
| 04년      | 15          | 참석 : 6회<br>대참 : 6회   | 참석 : 3회<br>대참 : 3회   | 참석 : 7회<br>대참 : 7회   | 참석 : 10회<br>대참 : 10회 |
| 05년 ~ 8월 | 8           | 참석 : 3회<br>대참 : 3회   | 참석 : 3회<br>대참 : 3회   | 참석 : 7회<br>대참 : 7회   | 참석 : 6회<br>대참 : 6회   |

## ■ 한마음 저축은행 관련

1. 예금보험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 예보는 한마음저축은행을 부산솔로몬 저축은행에 계약이전(P&A - 자산매각)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을 보면 계약이전이 아니라 인수합병(M&A)으로 볼 수 있다. PF(Project Financing)대출채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부산솔로몬으로 이전되었으며 PF(장부가 1,040억원)는 정리금융공사가 781억원에 인수해줬습니다.

1)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인수한 경우를 계약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2)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M&A를 P&A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한마음저축은행도 혹시 그런 경우가 아십니까?

<표 12> 한마음 저축은행 관련 지원 현황

| 대상 기관  | 출 연   | 대 출 | 합 계   | 내 용       |
|--------|-------|-----|-------|-----------|
| 부산솔로몬  | 3,210 | 120 | 3,330 | 순자산부족액 지원 |
| 정리금융공사 | -     | 781 | 781   | PF대출채권 인수 |
| 합 계    | 3,210 | 901 | 4,111 |           |

2. 한마음저축은행이 경영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 3,500개의 계좌에 대해 최고 대출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에 들어간 이후 10개월의 기간이 있었고 예보의 자산부채실사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같은 한도증액 사실이 명백하게 수정됐습니까?